

**2015년도
용현3동 자체행정감사 결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감 사 실)

2015년도 용현3동 자체행정감사 실시결과

I 감 사 개 요

1. 감사범위

가. 수감기관 : 용현3동 주민센터

나. 감사범위 : 2013. 3. 1 ~ 2015. 9. 30일 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2. 감사기간 : 2015. 10. 5 ~ 10. 8 (4일간)

3.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3명

4. 구민감사관 참관 현황

- 성 명 : 조 ○ ○

- 일 시 : 2015. 10 5 (1일)

5. 중점 감사사항

가.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나.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 여부

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라. 각종업무(서무, 주민등록, 민방위, 청소) 추진실태 등

Ⅱ 감 사 결 과

가. 행정상 조치 9건

- 시 정 3 건
- 주 의 6 건

나. 재정상 조치 2 건 122,000원

- 징수,환급 1 건 10,000원
- 지 급 1 건 112,000원

Ⅲ 주 요 지 적 사 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에도,

☞ 용현3 주민자치센터에서는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대상자중 수수료 징수 대상자 1인에게 근거없이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은 1인에게 재발급 수수료 징수

➡ 처분요구 :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징수 대상자에게 수수료 징수하여
인증처리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수수료 환급처리
하기 바람(시정)

◆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및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제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표시를 하고, 번호조립부의 실제 사용한 번호에 소인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착오부여로 번호가 살아있는 경우 “○”를 지우고“生”이라고 기재함에도,

☞ 용현3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번호조립부의 2013년 6월 8일 부여시 소인을 하지 않고 담당자 서명을 하였고, 2014년 7월 24일 착오부여시 볼펜으로“○”표시를 하고“미사용”이라고 기재하였고, 2015년 1월 19일 착오 부여시 “부여착오(살아있는 번호)”라고 기재함

➡ 처분요구 : 주민등록사무편람의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표기 및 관리 방법에 따라 조치(시정)

◆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동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부여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용현3동 주민센터에서는 2015년 1월중 전입신고 78건 중 통장 확인일 불명 15건, 미회수(미확인) 30건 총 45건의 전입신고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처분요구 : 전입신고자에 대한 주민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주의)

◆ 물품구입대금 지급 절차 부적정

- 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제29조(물품검사서)에 따르면 물품 구매를 계약한 후 물품이 납품된 경우 검사자는 납품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이 계약사항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작성하여 기관장(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 용현3동에서는 3건의 물품구입을 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물품검사절차(물품검사서를 작성)를 지키지 않고 대금을 지급함

➡ 처분요구 : 향후 동일 사례 없도록 물품구입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주의)

◆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가 있으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 용현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인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는 강사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관련 기준에 맞는 항목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공공운영비로 집행가능한 유류를 구입함

➡ 처분요구 : 향후 동일 사례 없도록 사무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주의)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 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함에도,

☞ 용현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하여 소속직원이 아닌 진출자를 위한 방식을 구입함



처분요구 :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업무 미흡

-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안내에 따르면 기존복지대상자 및 잠재적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전화, 방문, 방문형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의 변화, 기존 연계 서비스의 효과와 지속여부 등을 체크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개별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개별 복지대상자 모니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상담을 실시하고 신규복지대상자 선정, 전입, 가구원 추가 등 가구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14일 이내 방문하여 생활 실태 조사(자격관련 조사가 아닌 지원사항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용현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복지대상자가 전입 및 신규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14일 이내 방문하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신규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56명에 대해 선정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않음



처분요구 : 신규 복지대상자 발생 시 지원사항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잠재적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업무에 철저를 기할것(주의)

◆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급 부적정

-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급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중 홀로 거주하는 노인

에게 제공하는 건강 증진 서비스사업으로서, 지급금액은 월 8,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최초 지급 시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경우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만65세 이상 노인이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소멸 사유(수급중지, 사망, 주민등록말소, 국외이주, 부양의무자와 동거 발생시)가 발생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용현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타시도 전입 및 손자 전출, 동거인 사망으로 목욕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유 발생 해당월의 목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목욕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다음 분기부터 지급함

➡ 처분요구 : 미지급된 목욕비를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시정)